

|                |
|----------------|
| 제335회 제1차 정례회  |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
| 2022. 10. 5(수) |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80           |
| 제출일자 | 2022. 9. 23. |
| 회부일자 | 2022. 9. 28. |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재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4조)
- 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명확화(안 제7조제2항)
- 다.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감액 기준 구체화(안 제8조제2항)
- 라. 특별조정교부금 정보공개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세법」

## 5. 관련부서 협의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6. 검토의견

###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안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관해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7조제2항(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은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기존 ‘매분기 징수실적’에서 ‘매분기말 주민등록인구수와 징수실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8조제2항(조정교부금의 시정 등)은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1조의2(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 종합 검토의견

- 제1조(목적)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명확히 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개정 시 제1조의 '재정보전금'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재정보전금' 제도는 2000년 「지방재정법」 제24조의2(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에 의해 신설 및 도입되었으나 2014년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sup>1)</sup>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재정보전금' 용어의 사용은 상위법에 맞지 않고 의미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를 모태로 하며 2000년에 시·군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도입된 시·군 재정보전금(일반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과 시·도세 징수교부금 제도로 이원화되었다가, 2014. 5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보전금을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명칭 변경(일반재정보전금→일반조정교부금, 시책추진보전금→특별조정교부금)

< 「지방재정법」 \_2000.1.12. 시행/2000.1.12. 일부개정>

제24조의2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시·도지사(特別市長을 제외한다)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共同施設稅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人口 50萬 이상의 市와 自治區가 아닌 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特別市를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안의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_ 2014.11.29. 시행/2014.05.28. 일부개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 5. 28.>
-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관해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적정함.

### < 「지방재정법」 제29조1항 >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9. 12. 31., 2021. 12. 7.>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 안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는 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배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임. 다만, 안 제6조제2항제3호를 살펴보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한다고 되어있으나 조문이 불분명하게 구성되어 있어 의미전달이 명료하지 않을 수 있고, ‘각종 평가’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이에 조문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는 조정교부금의 반환 및 감액과 관련한 사항으로 안 제8조제2항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과 반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위법·부당한 집행을 방지해 예산낭비를 막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적정함.

**<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조정교부금 조치사항 >**

| 구 분                                   | 조치사항                                                                                                                                                                                                | 해당기관    | 조치기한   |
|---------------------------------------|-----------------------------------------------------------------------------------------------------------------------------------------------------------------------------------------------------|---------|--------|
| 반환·감액기준<br>정비로 제재의<br>실효성 및 형평성<br>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조금 반환·감액기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에 주요 감액 및 반납사유 명시</li> </ul> </li> <li>※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li> </ul> | 15개 시·도 | '22.8. |

- 안 제11조의2(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적정함.

**<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조정교부금 조치사항 >**

| 구 분                         | 조치사항                                                                                                                                                                                                            | 해당기관    | 조치기한   |
|-----------------------------|-----------------------------------------------------------------------------------------------------------------------------------------------------------------------------------------------------------------|---------|--------|
| 정보공개 범위<br>확대 및 법적근거<br>명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부사업 정보공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사업대상·위치, 사업항목, 사업기간 등) 추가 공개</li> </ul> </li> <li>※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li> </ul> | 15개 시·도 | '22.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조례에 정보공개 범위 명시</li> <li>※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li> </ul>                                                                                                              | 15개 시·도 | '22.8. |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큼. 그러나 조례안의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 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국민권익위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권고

| 구 분                                       | 조치사항                                                                                                                                                                                                                  | 해당기관                                    | 조치기한   |
|-------------------------------------------|-----------------------------------------------------------------------------------------------------------------------------------------------------------------------------------------------------------------------|-----------------------------------------|--------|
| ① 특별조정교부금<br>신청사업 사전검<br>증 절차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사업 사전 점검기준 운영</li> <li>※ ‘시·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기준(지침)’에 서식 반영</li> </ul>                                                                                                          | 15개 시·도                                 | ’22.2.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사업에 대해 시·군·구 예산부서 검토 및 시·도 유관부서 의견조회 실시</li> <li>※ ‘시·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기준(지침)’에 절차 규정</li> </ul>                                                                                | 15개 시·도                                 | ’22.2. |
| ② 외부 전문가가<br>참여하는 ‘특별조<br>정교부금 위원회’<br>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신설</li> <li>※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li> </ul>                                                                                                                      | 15개 시·도                                 | ’22.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세부 운영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위원 구성 비율·자격기준</li> <li>- 이해충돌방지규정 등</li> </ul> </li> <li>※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li> </ul> | 15개 시·도                                 | ’22.8. |
| ③ 교부사업 집행현<br>황 점검 및 관리<br>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에서 교부사업 집행현황 통합관리</li> <li>- 교부사업 집행 관리대장 서식 신설</li> <li>※ ‘시·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기준(지침)’에 서식 반영</li> </ul>                                                                       | 15개 시·도                                 | ’22.2.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잔액 재투자·반납현황 점검관리 및 재투자 사업 심사 강화</li> <li>- 집행잔액 재투자 관리대장 서식 신설</li> <li>- 재투자 사업 소관부서 의견조</li> </ul>                                                                       | 10개 시·도<br>(재투자 제도<br>미운영 5개 시·도<br>제외) | ’22.2. |



| 구 분                                       | 조치사항                                                                               | 해당기관    | 조치기한   |
|-------------------------------------------|------------------------------------------------------------------------------------|---------|--------|
|                                           | 회 실시 및 승인단계 상향<br>※ ‘시·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기준(지침)’에 반영                                     |         |        |
| ④ 반환·감액기준<br>정비로 제재의<br>실효성 및 형평<br>성 제고  | ▪ 특조금 반환·감액기준 정비<br>- 조례에 주요 감액 및 반납사<br>유 명시<br>※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                | 15개 시·도 | ’22.8. |
| ⑤ 최종 추경예산<br>성립 후 교부<br>된 경비 처리<br>기준 구체화 | ▪ 다음연도 성립 전 사용 금지<br>등 구체적인 처리기준 규정<br>※ ‘시·도 특별조정교부금 운<br>용기준(지침)’에 반영            | 15개 시·도 | ’22.2. |
| ⑥ 정보공개 범위<br>확대 및 법적근<br>거 명확화            | ▪ 교부사업 정보공개 확대<br>- 사업내용(사업대상·위치, 사<br>업항목, 사업기간 등) 추가<br>공개<br>※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 | 15개 시·도 | ’22.8. |
|                                           | ▪ 시·도 조례에 정보공개 범위 명시<br>※ 시·도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                                         | 15개 시·도 | ’22.8. |

참고

시·도별 특별조정교부금 현황

< 시·도별 특별조정교부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시·도명    | 2019년      |            |           | 2020년      |            |           |
|---------|------------|------------|-----------|------------|------------|-----------|
|         | 조정교부금      | 일반         | 특별        | 조정교부금      | 일반         | 특별        |
| 합계      | 13,701,345 | 12,332,629 | 1,368,715 | 14,373,868 | 12,948,314 | 1,425,554 |
| 서울특별시   | 3,512,656  | 3,161,390  | 351,266   | 3,706,210  | 3,335,589  | 370,621   |
| 부산광역시   | 859,346    | 774,639    | 84,707    | 935,636    | 843,285    | 92,351    |
| 대구광역시   | 558,436    | 502,591    | 55,845    | 554,788    | 499,308    | 55,480    |
| 인천광역시   | 669,794    | 602,815    | 66,979    | 726,255    | 653,630    | 72,625    |
| 광주광역시   | 368,366    | 331,530    | 36,836    | 389,089    | 350,180    | 38,909    |
| 대전광역시   | 342,469    | 308,222    | 34,247    | 332,808    | 299,527    | 33,281    |
| 울산광역시   | 279,053    | 251,148    | 27,905    | 249,676    | 224,710    | 24,966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 -         |
| 경기도     | 3,967,289  | 3,570,561  | 396,728   | 4,011,633  | 3,610,470  | 401,163   |
| 강원도     | 282,840    | 253,624    | 29,215    | 300,559    | 270,506    | 30,053    |
| 충청북도    | 407,639    | 366,878    | 40,761    | 412,381    | 371,143    | 41,238    |
| 충청남도    | 432,943    | 384,741    | 48,202    | 569,293    | 516,458    | 52,835    |
| 전라북도    | 372,111    | 334,900    | 37,211    | 372,125    | 334,912    | 37,213    |
| 전라남도    | 321,073    | 290,293    | 30,780    | 341,772    | 309,644    | 32,128    |
| 경상북도    | 563,457    | 511,720    | 51,737    | 530,152    | 481,610    | 48,542    |
| 경상남도    | 763,873    | 687,577    | 76,296    | 941,491    | 847,342    | 94,149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 -         |